

의정부지방법원 2017. 12. 20 선고 2017가단106794 판결

[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고A종친회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변론 종결2017. 12. 13.

판결 선고2017. 12. 20.

주 문

1.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,

가. 피고 B은 3/33 지분,

나. 피고 C, D, E은 각 2/33 지분,

다. 피고 F, G은 각 1/33 지분,

라. 피고 H, I은 각 11/33 지분에 관하여

2017. 9. 20.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피고 B, C, D, E, F, G

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3. 피고 H, I

공시송달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윤화랑

별지